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가단705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9. 3. 6.

판 결 선 고 2019.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 대 287.5㎡ 중 287.5분의 27.37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7. 접수 제664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1)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C 대 28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91. 6. 19. 접수 제61762호로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1동(9세대)이 건축되어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92. 1. 13. 접수 제2555호로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날 위 다세대주택의 대지권의 목적이라는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의 남편 F는 1993. 9. 14. 서울민사지방법원 G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다세대주택 중 H호(이하 '이 사건 H호'라 한다)를 낙찰받아 1998.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H호에 관한 낙찰허가결정문에는 입찰가격에 대지권의 가격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D는 1998. 10. 15. 위 가.항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1998. 11. 9. 서울지방법원 I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원고는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5항(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의 대지권 변경등기를 대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02. 6. 18.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이 2002. 5. 10.자로 이 사건 H호의 대지권의 목적이 아닌 것으로 되었다'는 취지의 대지권 표시등기가 이루어졌다.

바. 원고는 2002. 6. 20. 위 라.항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아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2. 7. 29. 접수 제89895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원고의 지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사. 한편 F는 2005. 8. 18. 사망하였는데, F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J, K, L은 2008. 6. 12.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지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12060)을 제기하였고2), 위 소송에서 2008. 12. 30.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사건 H호가 경매절차에서 F에게 낙찰되었다면 그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대지권도 F에게 낙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낙찰대금이 완납되면 경매목적물인 부동산 위에 존재하던 저당권은 낙찰인이 인수하기로 된 경우 이외에는 소멸하는 것이어서, F가 이 사건 H호를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D의 근저당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원고는 이미 소멸한 위 근저당권에 기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았으므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지분등기는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말소등기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말소등기 판결에 대해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059)와 상고(대법원 2009다38940)를 하였으나, 2009. 7. 23.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피고는 말소등기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7. 접수 제66481호로 원고의 지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자.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말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40789,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관련소송에서, ‘피고의 남편 F는 2002년부터 시작된 여러 번에 걸친 재판에서 담당 법관과 대법관을 속여 왔는데, 말소등기 판결은 F가 왜곡한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피고가 각급 법원과 대법원을 속여서 편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말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말소등기 판결이 F와 피고의 소송사기에 의한 사위판결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항소가 2016. 12. 9.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3960)에서 기각되어 2016. 12.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차.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37421호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10.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이 집합건물이기는 하나, 원고가 낙찰받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E은 대지권이 성립하기 전에 토지에 대해서만 먼저 D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 대지권이 성립한 다음 E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피고(F)의 주장과 달리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원고는 낙찰받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그럼에도 말소등기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소장(갑 1호증) '2. 토지 건물 위의 근저당권' 항목에는 "E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1991. 6. 19. 주식회사 D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에 1992. 6. 19. 접수 제61762호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였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5회에 걸친 소송과정에서 대법관 4명 등 총 12명의 법관들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위와 같은 거짓내용에 속아서 이에 대한 심리 및 판단조차 하지 못한 채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지분등기를 말소한 이 사건 말소등기는 불법행위(소송사기)에 의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3) 또한 위 1.라.항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았을 때 F는 항고 및 재항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라734 및 대법원 2004마660)를 제기하였다가 모두 기각된 사실이 있는데, 피고는 이를 숨기고 항고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을 하여 소송사기를 하였으므로, 위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나. 판단

1) 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로서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2) 그러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했던 사유와 후소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이 모두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면, 전소와 후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말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관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6. 12. 28.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관련소송에서

주장했던 사유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이 사건 말소등기의 원인이 된 말소등기 판결이 소송사기에 의한 잘못된 판결이다’라는 취지로서 이 사건 말소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며 관련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말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관련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

1)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는 ‘소유권이전등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원인의 내용과 갑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말소등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 갑 1호증의 기재와 같이 소장에는 “F”가 원고로 기재되었다가 나중에 당사자표시 정정이 이루어졌다.